

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(이하 본회)의 목사 정-부회장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범위) 본 규정은 목사 정-부회장 선거업무에 적용하되 본회 회칙에 우선할 수 없다.

제2장 조직과 회의

제3조 (조직) 본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는 본회의 평신도 부회장, 총무, (사무)서기, 전 회장 1인, 이사회 이사장, 이상 5인으로 한다.

제4조 (임원) 본 선관위는 위원장 1인, 서기 1인, 회계 1인을 둔다.

제5조 (임기) 본 선관위의 위원 및 임원은 총회 3개월 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.

제6조 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, 임원회의 요청 시, 혹은 선관위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 (정족수)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업무 및 선거관리

제8조 (등록 공고) 본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을 위하여 등록 마감 1개월전까지 공문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(등록)

1. 본회 목사 정-부회장에 입후보 할 자는 제11조에서 요구하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2.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.

제10조 (자격) 본회의 목사 회장-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
2.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
3. 최근 5년 동안에 회비를 완납한 자
4.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

제11조 (등록서류)

1. 등록원서 1통(본회 소정양식)
2. 소속교단 추천서 (본회 소정양식)
3. 이력서 1통
4. 사진 1매
5. 모든 서류의 허위 및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.

제12조 (소견발표)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.

제13조 (선거운동) 본선관위가 정하는 규정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4장 개정 및 발효

제14조 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초안을 작성하여 회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 2/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